

5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-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, 2017년 우리 순창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대상인원 (A)	세출 결산액 (B)	맞춤형 복지비 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
834	307,798	662	0.22	794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▶ 세출결산액 : '17년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
- ▶ 맞춤형복지비 : '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

❖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대상인원 (A)	795	803	803	844	834
세출결산액 (B)	255,798	271,319	278,554	301,311	307,798
맞춤형 복지비 (C)	632	641	637	640	662
비율(C/B)	0.25	0.24	0.23	0.21	0.22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	795	799	793	759	794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

